

# 15. 租稅減免規制法中改正法律(案)

## 立法豫告

재정경제원공고 제1997-79호 1997. 8. 25

### 주 요 골 자

- 가. 기업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양도 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100퍼센트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나. POS시스템(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도입 사업자, 신용카드 거래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매출액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납부세액에서 경감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과표양성화를 유도하도록 함.
- 다.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와의 중복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현재는 배당소득의 19퍼센트 상당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동일한 금액을 종합소득세액에서 배당소득세액 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현행 공제율과 실제법인세부담율에 의하여 환산한 공제율중에 사업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자본에 의한 경영을 장려함.
- 라. 개인사업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 출자금액(50억원 한도)의 2퍼센트와 소득금액의 7퍼센트를 합한 금액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을 소득금액의 5퍼센트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그 대신 필요경비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3년간 이월하여 공제를 허용하여 기부금 지출에 탄력성을 부여함.

- 마.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필요경비인정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기초금액을 현재의 2천400만원에서 1천200만원(중소기업은 1천800만원)으로 하는 등 세법상 접대비 한도를 전반적으로 축소하고, 1인당 접대비 지출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과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통업소등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한도 이내이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도록 함.
- 바. 어민들의 협업적 조직인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 조합원당 1,200만원에 상당하는 소득을 공제하고,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1인당 1,200만원까지 면제하고 초과분은 5퍼센트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는 등 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
- 사. 중소기업간 통합·법인전환·중소기업의 사업전환·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수도권내 법인분사 지방이전·5년이상 가동공장 이전등 기업이 구조조정을 할 경우 현재는 구조조정 당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50퍼센트 감면받거나, 구조조정 당시 100퍼센트 면제를 받고 추후 과세하는 과세이연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면서, 3년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여 사후관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전 사업자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고 후에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함께 과세하는 과세이연방법으로 단일화하고 사후관리를 폐지하여 기업의 구조조정 당시에는 양도세 부담이 없도록 하면서 사후관리로 인한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음.

### 개정 이유

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등을 개선하고, 거래자료가 객관적으로 노출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감하여 줌으로써 과표양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